

	법익·개인적 법익 침해 · 시정권고의 필요성 · 피해자 이외 제3자의 신청도 가능	고소위원회의 결정	고와 그 내용의 외부공표 및 언론사의 시정
형사처벌	· 범죄구성요건해당성 · 고의·과실과 위법성 ·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,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	· 법원의 형사소송절차	형벌

## 2. 언론중재 관련법의 연혁

- 1980. 12. 31. 언론기본법 제정, 정정보도청구권(사실은 ‘반론보도청구권’ 임) 도입
- 1981. 3. 31. 언론중재위원회 제도 도입
- 1987. 11. 28. 언론기본법이 폐지됨과 더불어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 및 골격이 유지된 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분리 수용
- 1991. 12. 31.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종합유선방송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‘정정보도청구권’을 인정
- 1995. 12. 31.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. ‘반론보도청구권’이라는 정식 명칭 채택
- 2005. 1. 27.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언론피해구제제도 통합

## 3.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

### (1) 언론의 자유와 책무의 명확화

언론의 자유와 독립(언론중재법 제3조), 언론의 사회적 책임(동법 제4조)이 명정되어 있으며, 특히 인격권(사망자의 인격권 포함) 보호의무(동법 제5조)가 강조되고 있다.

### (2) 적용대상 범위의 다양화

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방송·정기간행물·뉴스통신뿐 아니라 인터넷신문으로까지 다양화하고 있다(언론중재법 제2조 1호).

### (3) 자율적 예방활동의 강화

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,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(언론중재법 제6조).

### (4)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등 보장

언론피해 조정·중재 등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그 국가사회적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독립 설치한다.